

남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

(한근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0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5. 30.

발 의 자 : 한근수, 이정애, 박은경,
김동훈, 원주영

1. 제안 이유

청소년이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청소년 권익 증진 및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- 가.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, 구성 등에 관한 규정(안 제3조~제4조)
- 다.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책무에 관한 규정(안 제5조)
- 라. 위원 위촉·임기 및 해촉에 관한 규정(안 제6조~제7조)
- 마.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(안 제8조)
- 바. 회의에 관한 규정(안 제9조)
- 사. 의견수렴에 관한 규정(안 제10조)
- 아. 포상에 관한 규정(안 제11조)
- 자.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(안 제12조)

3. 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예산수반사항 : 덧붙임

5. 관련법령

가. 「청소년 기본법」

나. 「청소년 기본법 시행령」

남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청소년”이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설치 및 기능) ① 남양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남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남양주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청소년 관련 정책, 사업추진 및 평가 과정에 대한 자문·건의
2. 청소년 권리·인권 현황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
3. 청소년 포럼·토론회·각종 캠페인 참여 및 기획 등에 관한 사항
4. 위원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및 워크숍 등의 운영
5. 경기도 및 다른 시·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 및 교류 활동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지역 내 청소년 25명 내외로 구성하고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는 지역별, 성별,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.

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.

제5조(책무)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시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.

제6조(위촉 및 임기) ①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위원회 활동은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.

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해촉)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

2.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

3. 위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

4.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“특별한 사유”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천재지변

2. 학교시험

3. 본인 질병과 사고

4.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(2촌 이내)의 상 또는 결혼

5.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
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, 장소, 안건 등

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의견수렴) 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, 건의사항 등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제시한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.

제11조(포상)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인 위원에게 「남양주시 포상조례」에 따라 표창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.

제12조(위탁운영)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5조의2에 따라 설치·운영 중인 남양주시청소년참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남양주시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

○ 남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

나. 비용 발생 요인

○ 「남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」 안 제12조(위탁)

제12조(위탁)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2. 미 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3. 미 첨부 사유

현재 남양주도시공사 미래청소년처에 사업을 위탁하여 ‘청소년시설운영 대행사업비’의 예산 내에서 사업비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소요예산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.

· 2025년 청소년참여위원회 소요예산 (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) : 7,000천원[전액 시비]

○ 행사운영비 : 3,400천원

- 워크숍 운영 1회 : 400,000원

- 위원회 운영비(각종 청소년 행사 참여 부스 운영, 타 지자체 교류 등) 250,000원 × 12회

○ 행사실비지원금 : 3,600천원

- 급식비 : 9,000원 × 25명 × 12회 = 2,700,000원

- 교통비 : 3,000원 × 25명 × 12회 = 900,000원

[참고] 2024년 소요예산 : 5,900천원 / 2023년 소요예산 : 5,000천원

4. 작성자

문화교육국 청년정책과 과장 박미경

☑ 「청소년 기본법」

제5조의2(청소년의 자치권 확대)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·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,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·협의·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·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.

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☑ 「청소년 기본법 시행령」

제2조의2(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(이하 “참여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은 성별·연령·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.

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하며, 참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.

③ 참여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④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,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.

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여위원회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·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.